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02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이연희·박상혁·허종식

한준호 • 한민수 • 김남희

이수진 • 복기왕 • 유종군

박 정ㆍ이정문ㆍ문진석

이광희 • 정준호 • 이춘석

손명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,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'건설사업관리'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도로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에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로공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6조(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	제36조(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		
도로공사 등) ① ~ ③ (생	도로공사 등) ① ~ ③ (현행과		
략)	같음)		
<u><신 설></u>	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		
	따라 허가한 도로공사 중 대통		
	<u>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에</u>		
	대하여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		
	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		
	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		
	다.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에 소		
	요되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		
	<u>아닌 자가 부담한다.</u>		